##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10

발의연월일: 2021. 5. 27.

발 의 자: 어기구·김승원·김정호

박상혁・박 정・서삼석

송재호 · 위성곤 · 윤재갑

이병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재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유통·판매 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이 법과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입 석재 품목의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 나.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을 정비함(안 제19조제1항).
- 다.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 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 마. 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

#### 법률 제 호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4항 단서 중 "유통하기로 계약"을 "채취"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을 "채취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을 "오인(誤

認)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을 "표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사용하거나 판매·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전단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협회 등"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제25조 중 "한국임업진흥원 및 협회 등"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석재 유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하기로 계약한 석재의 경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	③
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년 <u>시행계획</u> 을 수립·시행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야 한다.	라 한다)
<u>&lt;신 설&gt;</u>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
	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
	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
	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략)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 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라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처분을 받은 날부터 석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석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19조(원산지 표시 등) ① 석재 기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공예용·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석재의 품질을 향 상시키고 이를 지역 특화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재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

(현행과 같음)
4
<u>채취</u> -
제19조(원산지 표시 등) ①
채취하
거나
<u>/ - </u>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 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등 록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 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 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 경하는 행위
- 나, 원산지 표시를 한 석재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석 재와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 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 4. 원산지를 위장하여 건설공사 용으로 사용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석재를 원산지 표 시를 하지 않은 석재와 혼합 하여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

<u><</u>삭 제>

세20소(거짓 표시 등의 금시)
1
<u>오인(誤認)하게</u>
2표시를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 3.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 여 판매·사용하거나 판매·사 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삭 제>

는 행위

제21조(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 ① 석재사업자는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 가를 받아 석재사업자협회(이 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및 협회의 업무 등 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u>산림청장</u>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 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 <삭 제>

제	233	조(자	豆	제공	요청)	<u>산림</u>	청장
	<u>등</u> -						

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 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 행과 같음) 략) (2)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 제) -----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및 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워으로 본다.